

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

제1회 KAIA EDU

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

2021.03.24



Contents

CHAPTER I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

1. 제도 개요
2. 추진 체계 / 지정 혜택
3. 심사절차

CHAPTER II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청 안내

1. 신청 방법
2. 심사 기준
3. 자주 묻는 질문(FAQ)



■ 제도 개요

목적

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(R&D)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**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지원**
및 **공공조달 연계 활성화**

신청대상

- ①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**중소기업자**로서,
- ② 종료연도 기준 **최근 5년** 이내*('16.1.1. ~ '20.12.31) **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완료(성공) 기술**** 을
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***

* 접수연도('21년) 기준

**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 과제(60점 이상) 통보를 받은 기술

***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고 있는 중소기업, 기술이전 받은 기술을 제품화한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

추진 근거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
-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제1항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33조 제1항 제1호
-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(기획재정부훈령 제524호)
- 「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」(이하 '지침') (국토부고시 제2020-1147호)

I.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

추진 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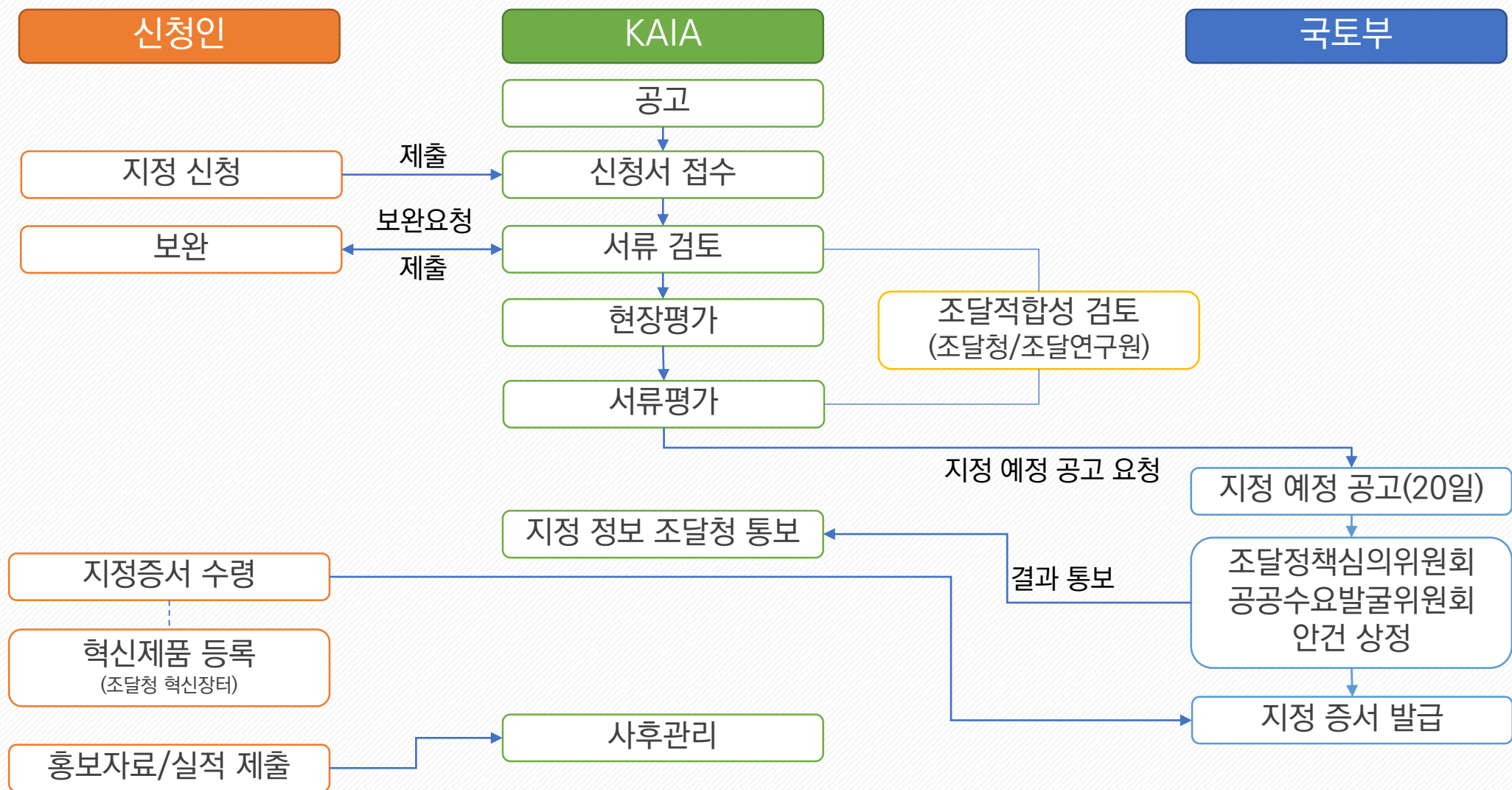


지정 혜택

- 1 지정고시일로부터 **3년간** 공공 조달시 **수의계약** 가능(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)
- 2 조달청 **혁신장터** 등록, 시범구매 연계 지원(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)

I .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

■ 추진 절차



II.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청 안내

■ 신청 시기 및 방법

신청 시기	연 2~3회 공고하며, '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' 홈페이지, 카카오톡 채널추가로 공고 확인 가능 * 2021년은 4, 7, 10월 공고 예정
신청 방법	① 나라장터(www.g2b.go.kr)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후, ② 국토교통과학기술기술진흥원 접수처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
제출 서류	- 공문 - 신청서 - 제품설명서 - 제품 규격서(자기점검표, 각종 인증 자료,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포함) - 기타 기술혁신성 심의 자료 증빙(시험성적서, 지재산 목록 등)
평가 내용	- 조달적합성 평가(조달청, 조달연구원) - 기술혁신성 평가(현장평가, 서류평가) -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 발굴위원회 안건 상정 및 확정

II.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청 안내

■ 기술혁신성 평가 기준(현장평가)

평가 항목	세부 평가 내용
1. 제품의 확인	- 신청인이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
2. 연구개발기술 적용	- 신청 제품에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의 적용 여부
3.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	- 신청인이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
4. 제품의 성능 확인	-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
5. 기타 확인사항	-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현황 확인

II.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청 안내

■ 기술혁신성 평가 기준(서류평가)

평가 항목	세부 항목	세부 평가 내용
1.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(40)	가.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	- 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·제품인지 여부 * 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, 국민 생명·안전 보호,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
	나. 공공구매 필요성	- 신기술 적용제품·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*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*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
	다. 현안의 시급성	-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*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, 국민적 수요, 공론화 정도 * 해당 문제로 인한 기관의 경영상 손실과 시급성 정도
	라.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	- 신기술 적용 제품·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* 국민생활 향상, 사회 안전 해결,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 *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

II.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청 안내

■ 기술혁신성 평가 기준(서류평가)

평가 항목	세부 항목	세부 평가 내용
2. 시장성 (20)	가. 기대 시장규모	-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* 신기술 적용 제품·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-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* 신기술 적용 제품·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/규모
	나. 타 산업 파급성	- 공공구매 확장성 *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(국내/국외) -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·발전 가능성 *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*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
3. 혁신성 (40)	가. 기술·제품의 신규성	-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,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,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*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 * 품질, 사용의 편의성, 가격프리미엄 등
	나. 기술·제품의 탁월성	-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·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
	다. 기술 완성도 및 실현 가능성	-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 - 신기술 적용제품·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

II.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청 안내

■ 조달적합성 평가 기준(규격 검토)

검토기준	항목	하위항목	세부 검토사항	비고
①제품 규격서 항목별 형식상의 적절성	1. 제품의 개요	1.1 적용범위	신청규격의 일반적·특수적 기능과 용도의 범위를 누락없이 기재했는지 여부	적합/ 부적합
		1.2 특징	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의 청구항을 중심으로 특징을 나열했는지의 여부	
		2.1 제원	물품분류번호, 물품식별번호, 모델명, 사양 등의 올바른 작성 여부	
	2. 규격	2.2 품질기준	① KS, 단체표준 또는 품질인증 등을 인용할 경우 그 기준값 이상을 설정 했는지 여부 ② 업체 제시 기준의 경우, 시험성적서의 결과값에 준하여 설정되었는지 여부 ③ 모델별 품질기준을 달리하는 경우, 개별적으로 품질기준값을 적용했는지 여부	
		2.3 제품에 적용된 기술	제안된 지식재산권에 해당되는 기술자료를 기재했는지 여부	
	3. 구성,재료		규격별로 재료 및 주요 자재구성표를 작성하고 원산지를 기재했는지 여부	
		4.1 전체 사진	규격별(또는 대표규격) 전체사진의 기입 여부	
	4. 형태	4.2 제품구조	각 구성부에 대한 구조 이미지와 기본적인 설명이 명확히 작성되었는지 여부	
		4.3 마감 및 외관	제품의 마감 및 외관의 취급 등에 대해 적절히 기술되었는지 여부	
	5. 제조 및 가공		제조공정에 관한 현장사진 또는 제조공정표 등을 활용하여 명확히 작성했는지 여부	
	6. 기능 및 성능	6.1 기능	적용된 지식재산권에 해당되는 기술의 명칭 및 상세설명을 기재했는지 여부	
		6.2 성능	① 제안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항목·시험기준·시험방법의 기재 여부 ② 기술된 성능항목들이 KS, 단체표준, 품질인증, 자체규격에 해당 여부	

II.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청 안내

■ 조달적합성 평가 기준(규격 검토)

검토기준	항목	하위항목	세부 검토사항	비고
①제품 규격서 항목별 형식상의 적절성 (계속)	7. 하자보증	-	인명과 관련된 규격의 경우 하자보증기간을 3년, 시스템 장비 규격의 경우 하자보증기간을 2년, 그 외의 경우 하자보증기간을 1년 이상으로 기재했는지 여부	
	8. 포장 및 표시	8.1포장	자체 규정하는 포장의 방법, 포장재질, 수단 등을 기재했는지 여부	
		8.2 표시	자체 규정하는 표시사항, 표시장소, 표시방법 등을 기재했는지 여부	
	9.적용자료		제품의 기술, 품질과 관련된 표준과 형식승인, 인허가 등 인용자료의 최신화 작성 여부	
②시험 항목, 시험 방법, 품질기준의 타당성	시험 항목	-	규격서에 제시된 시험항목이 해당 품명의 성능 및 품질 측정을 위한 포괄성·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	적합/ 부적합
	시험 방법	-	규격서에 기재된 시험방법이 시험기관 내에서 또는 기업체 내에서 실질적으로 수행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	
	품질 기준	-	시험항목의 포괄성·타당성 확보를 전제로 제시된 기준치의 적정성 여부(과소 또는 과대 설정 여부 등)	
③ 형식승인, 법정 인·허가의 수용성	법정 규제	-	제품의 생산·판매를 위해 사전 또는 사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 관계 법령·제도명, 허가받아야 하는 사항을 적절히 반영했는지의 여부	적합/ 부적합

II.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청 안내

■ 자주 묻는 질문(FAQ)

Q1 ▶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범위는?

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(구. 과학기술기본법)에 따라 전문기관(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)을 통해 지원되는 연구개발 과제를 의미합니다. 국토교통부 과제 여부 확인은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(NTIS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Q2 ▶ 기술혁신성 심의를 위한 자료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?



- 기술혁신성을 입증하기 위한 **지식재산권** 확보 내용(특허), 신청 제품의 **성능에 대한 제3자 주체 평가결과(공인시험성적서, 인증서 등)**, 신청 제품의 **환경성(내구도 등)에 대한 제3자 주체 시험결과(공인시험성적서, 인증서 등)** 등을 의미합니다.

Q3 ▶ 중소기업만 신청가능한지?



- 본 제도는 중소기업의 혁신제품 판로지원을 위해 수의계약 및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자격은 **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**만 가능합니다.
- 중견기업, 대기업 및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.

■ 자주 묻는 질문(FAQ)

Q4 ▶ 중소기업이 직접생산하는 제품만 신청가능한가요?



- 직접 생산 설비를 갖추지 않고 별도 기업에 위탁하여 생산을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Q5 ▶ 법정 의무인증은 무엇을 의미하는지?



- 제품의 생산·판매를 위해 사전 또는 사후허가를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 사항 등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·제도에 따른 인증이 완료되어야만 신청가능합니다. (예. 철도형식승인,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(KC인증) 등)

Q6 ▶ 국토교통부 연구개발 성과로 도출된 기술을 이전받아 생산한 제품도 신청가능한지?



- 가능합니다. 이 경우 이전된 기술이 혁신제품에 적용되었는지 확인가능하도록 기술이전계약서(이전기술 세부내용 포함) 등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감사합니다

T H A N K Y O U



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